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탄천물재생센터 3차(총인)처리시설 설치사업[장기계속]]

- 점검일시 : 2020.02.27 (목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박상종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1처리장 A-BLOCK 유출 BOX (2.0m×2.0m)는 BOX 상부 조인트 실링 작업시 단부 추락 우려가 있으니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대걸이 시설을 설치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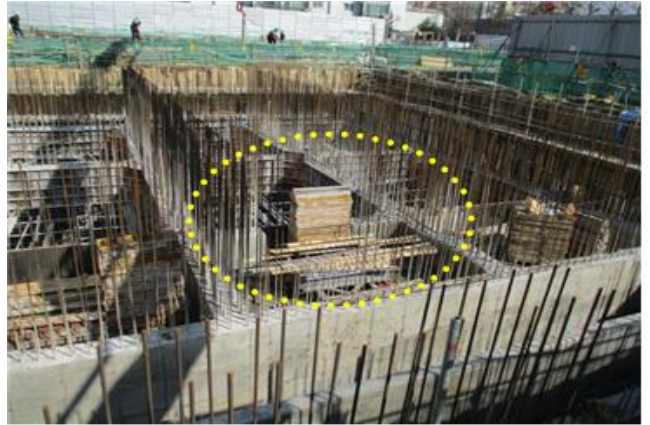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1처리장 B-BLOCK 작업은 협소한 공간에 가설 자재, 거푸집 등이 통로 상에 적치되어 있어 근로자 이동시 전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통로를 확보 바람,
 - 처리장 내 비계로 진입하는 통로가 없어 난간을 넘어 진입할 경우 전도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안전한 작업통로를 확보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방재시설부)

- 1처리장 B-BLOCK 적치된 거푸집은 개구부 상부에 불안정한 상태로 적치되어 있거나, 다단으로 높게 적치되어 외부 충격에 낙하, 전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이동적치 바라며, 관련 근로자는 중량물취급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바람.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24(4. 중량물 취급/기타 낙하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1처리장 A-BLOCK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구간은 측면으로 추락우려가 있으니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 출입금지 조치 바라며, 작업 전(양생완료 후) 슬래브 단부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작업 하도록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2처리장 슬래브 단부는 벽체 방수작업으로 되메우기가 완료되지 않아 추락 우려가 있으나 단부 추락방지 시설이 로프 설치, 접근 금지시설 표기 미설치, 콘크리트 타설 작업으로 난간 철거 등 안전난간 설치 상태가 미흡하니 추락방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바라며, 부득이 안전난간 설치



가 어려워 접근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단부에서 일정거리 이격하여 근로자 전도에 의한 추락 우려가 없는 안전거리를 확보, 근로자가 인지하기 쉽게 접근금지 표기를 바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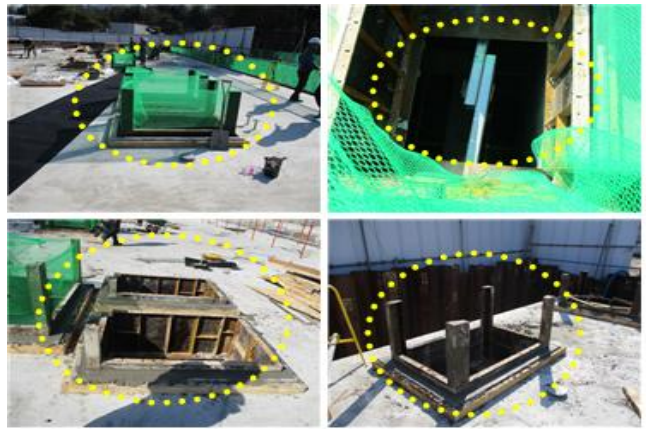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2처리장 슬래브 상부에 개구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였으나 설치 높이가 낮고 상부가 노출되어 있어 추락방지 기능을 할 수 없으니 덮개 또는 추락방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안전시설로 보완 바람, 근로자가 개구부임을 인지하기 쉽게 표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2처리장 방수작업을 위하여 하부로 내려가는 가설통로(계단)는 안전난간이 계단 중간에서 단절되어 전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안전난간을 설치기준에 맞게 보완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

